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성적서의 위조·변조 방지 조치 의무 등 위반에 대한
인정취소 근거 마련 등〉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46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성적서의 위조·변조 방지 조치 의무 등 위반에 대한 인정취소 근거 마련	3
2. 성적서를 부정하게 발급·제공·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7. 11.
3. 회부연월일 : 2025. 7.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하여 성적서 위조·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함과 아울러,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에 관한 부정행위 유형을 3가지로 규정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험 항목의 누락 등 오류가 있는 성적서 발급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정행위 유형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나머지 유형의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내릴 수 없고, 성적서 위조·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관리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아무런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않으며, 성적서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부정성적서 발급 및 제공·사용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에 관한 부정행위 유형 3가지 각각

에 대하여 인정취소 등 동일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성적서 위조·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도 아울러 규정하며, 부정성적서 발급 및 제공·사용에 대한 법정형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26조)..

1. 성적서의 위조·변조 방지 조치 의무 등 위반에 대한 인정취소
근거 마련

[개정안 조문대비표]

– 3 –

현행	개정안
<신설> 4. <u>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u> 5. ~ 9. (생략) 10. <u>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② · ③ (생략)	<u>적·관리적 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u> 3의3. <u>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일정기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u> 4. <u>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u>----- 5. ~ 9. (현행과 같음) 10. <u>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 또는 제4호</u>-----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적합성평가기관은 성적서를 발급하는 교정기관·인증기관·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으로써,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적합성평가기관은 인정기구¹⁾로부터 공인기관²⁾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1) 「국가표준기본법」,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공인하는 기구

[국내 인정기구 현황]

구분	KOLAS(한국인정기구)	KAB(한국인정지원센터)	NIER(국립환경과학원)
인정대상	시험, 교정, 검사,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 숙련도시험운영, 생물자원은행, 검증(환경정보), 제품인증 등 9개 분야	경영체제인증, 자격인증 등 2개 분야	검증(환경정보) 등 1개 분야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공인기관”이란 제8조에 따라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적합성평가기관을 말한다.

현행법 제5조³⁾는 공인기관 등이 성적서 발급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인기관은 ① 성적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5조제1항), ② 발행한 성적서에 대한 적합성평가 관계 자료를 일정 기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제5조제2항), ③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제5조제3항), ④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됨(제5조제4항).

그런데 현행법은 성적서 발급과 관련한 공인기관의 준수사항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제5조제3항)에는 인정 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⁴⁾,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제5조제4항)에는 5백만

3)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적서 발급 등) ① 공인기관은 성적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발행한 성적서에 대한 적합성평가 관계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성적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

2.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④ 공인기관은 시험 항목의 누락, 측정 기준의 오적용(誤適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적합성평가 의뢰자 또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업무에 활용하는 자는 적합성평가기관이 발급한 성적서를 위조·변조하거나,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이상을 위배하여 발급된 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⁵⁾,

성적서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제5조제1항) 및 성적서 관계 자료의 유지·관리 의무(제5조제2항)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수단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공인기관이 성적서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 및 성적서 관계 자료의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인정취소 등 행정처분의 사유 중 하나인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의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부정한 성적서의 유통 차단 및 공인성적서의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현재 성적서 관계 자료의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인

4)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자
2. 제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성적서임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자
3. 제5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자
4. 제5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성적서임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자
5. 제5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자
6. 제5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성적서임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자
7. 제5조제5항을 위반한 자

5)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③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발급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KOLAS⁶⁾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 상황인데⁷⁾, 인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개정안

6)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

7) 현행법 제13조제1항제6호 및 현행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위임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4]에 따라 인정취소 등 행정처분 가능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정취소 등) ① 인정기구의 장은 공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정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6.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에서 기술·인력·설비 또는 환경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인기관에 대한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공인기관 행정처분기준(제13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마.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에서 기술·인력·설비 또는 환경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6호			
1)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u>경미한 사항</u> 에 대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개선명령	해당 분야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3개월	해당 분야 인정취소
2)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u>중대한 사항</u>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분야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3개월	해당 분야 인정취소	
3)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u>치명적 사항</u>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분야 인정취소	전체 분야 인정취소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별표 4]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에서 기술인력설비 또는 환경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의 결함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구분	항 목
1. 치명적 사항	다. 필수적인 원시데이터 등 기술기록의 전체를 확인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중대한 사항	나. 필수적인 원시데이터 등 기술기록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과 같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임.

또한, 안 제13조제4호⁸⁾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⁹⁾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인기관에게 인정취소 등의 처분이 가능하나, 현행법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인정취소 등의 처분 근거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성적서 발급에 관한 부정행위 유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성적서 발급 관련 부정행위 유형]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적서 발급 등)

① ~ ② (생략)

③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성적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

2.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④ ~ ⑤ (생략)

8) 4.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9)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정취소 등) ① 인정기구의 장은 공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1.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3. 공인기관 인정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5. ~ 10. (생략)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과 같이 공인성적서 위조·변조 방지 조치 의무 및 관련 자료 유지·관리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성적서를 부정하게 발급·제공·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

개정안은 성적서를 부정하게 발급·제공·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3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략)	제26조(벌칙) ----- ----- <u>5년</u> ----- ----- <u>5천만원</u> ----- -. 1. ~ 7.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6조¹⁰⁾는 ①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평가를 하지

10)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자
2. 제5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성적서임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자
3. 제5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자
4. 제5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성적서임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자
5. 제5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자
6. 제5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성적서임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자
7. 제5조제5항을 위반한 자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성적서임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자, ③ 적합성평가기관이 발급한 성적서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적합성평가 의뢰자·적합성평가 결과를 업무에 활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 공정 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의미하는데, 제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 최종 완제품 및 서비스를 접하는 소비자는 생산자에 비해 원료나 공정 등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적합성평가는 제품 및 서비스가 공인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성적서11)는 이러한 적합성평가의 결과를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성적

제5조(성적서 발급 등)

③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성적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평가 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
2.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⑤ 적합성평가 의뢰자 또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업무에 활용하는 자는 적합성평가기관이 발급한 성적서를 위조·변조하거나,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이상을 위배하여 발급된 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서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 제공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성적서를 부정하게 발급·제공·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수준이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성적서를 부정하게 발급·제공·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부정성적서의 발급 및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① 부정성적서 발급 등에 관한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입법례마다 다

11)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성적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교정성적서: 특정 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등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의 결과를 기록한 문서
- 나. 인증서: 인증기관이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에 대하여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 인증결과를 기록한 문서
- 다. 시험성적서: 시험기관이 특정한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술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기록한 문서
- 라. 검사성적서: 검사기관이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에 대하여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를 기록한 문서

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최근 4년간 해당 행위의 위반사례가 매년 5건 안팎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부정성적서 발급 등에 관한 처벌 관련 입법례]

법정형	법률명	관련 조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11. 제34조의2제3항제6호 또는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u>임상시험성적서, 임상시험검체분석 성적서 또는 비임상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자</u>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u> 2.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u>고의로 거짓된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발급 또는 통보한 자</u>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먹는물관리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7의3.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u>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자</u>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기법	제5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1. 제10조제5항, 제10조의2제3항 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u>임상시험결과보고서, 비임상시험 성적서 또는 품질관리심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발급한 자</u>

[부정성적서 발급 등 의무 위반 건수]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제5조제3항 위반	1	4	5	5	15
제5조제5항 위반	0	1	2	1	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현행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공인기관에 대해서는 벌칙 외에 인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처벌 수위를 높이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제재수단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성적서를 부정하게 발급·제공·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여부는 제재 강화에 따른 범죄 억제효과, 유사한 의무 위반에 대한 타법의 처벌 수위, 해당 의무 위반의 발생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적합성평가와 성적서 발급의 신뢰성 및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안과 같이 법정형 수준 상향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57